

『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환경교통국장 남병국

나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(21.9) 및 시행(22.3)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구미시 역할 구체화 및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·시책 추진 근거 마련

다. 주요내용

-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(안 제6조)
-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·시행 근거 규정 (안 제7조)
-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(안 제8조)
-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·시행 근거 규정 (안 제9조)
-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지정 근거 마련 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은,
 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폐지되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(‘21.9)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,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,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
 -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,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례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